

의안번호	2210430
의 퇴 인	장경태의원
회 답 일	2025.6.5.
추 계 번호	24D281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대법관과 대법관비서관을 각각 86명 증원하는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2027년 107억 9,100만원, 2031년 355억 3,4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373억 8,400만원(연평균 274억 7,7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정: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대법관 증원 (안 제4조)	인건비	9,154	19,094	29,524	30,257	31,010	119,039	23,808
	기본경비	524	1,091	1,686	1,727	1,768	6,796	1,359
	자산취득비	284	301	307	—	—	892	178
	차량 임차료	829	1,721	2,649	2,702	2,756	10,657	2,132
	합계	10,791	22,207	34,166	34,686	35,534	137,384	27,477

주: 본 추계는 인건비,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차량 임차료 등 추계가 가능한 항목에 한정하여 추계한 결과이며, 실제 대법관이 증원되는 과정에서 법정 시설비, 사무실 재배치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조제2항 및 안 부칙 제1조	대법관의 수를 14명에서 100명으로 86명 증원함 - 28명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29명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29명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하는 날부터 각각 증원함(안 부칙)	의무규정

III.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4조제2항 및 안 부칙 제1조	○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대법원의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인건비(보수, 기관부담금),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차량 임차료로 구분하여 추계함
-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에 따라 증원되는 대법관과 함께 대법관비서관도 증원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그 외의 인력은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함
 - 「법원조직법」 제23조¹⁾에 따르면 대법관에게 대법관비서관(4급)을 두도록 하고 있으므로 대법관비서관도 함께 증원되는 것으로 가정함
 - 다만, 대법관이 증원되는 경우 재판연구관 등의 증원도 필요할 수 있으나, 현시점에서 재판연구관 등의 증원 여부, 증원 또는 재배치 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추계의 대상에서 제외함
- 본 추계에서 대법관 증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사회보험 기관부담 요율, 소비자물가상승률, 기관 설립 1인당 자산취득비(정부기관) 단가를 각각 적용하여 추정함²⁾
- 개정안은 부칙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실제 대법관의 증원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연도별로 충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법관과 대법관비서관을 2027년 각 28명, 2028년 각 29명, 2029년 각 29명이 각각 충원되는 것으로 가정함

1) 「법원조직법」

제23조(대법원장비서실 등) ④ 대법원에 대법관비서관을 둔다.

⑤ 대법관비서관은 법원서기관 또는 4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기관부담 요율, 소비자물가상승률, 1인당 자산취득비 전망(2025.3.31. 경제전망 기준)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2.4	2.4	2.4	2.4	2.4	2.4	2.4
기관부담 요율(%)	13.066	13.130	13.194	13.286	13.380	13.476	13.559
소비자 물가상승률(%)	2.0	2.0	2.0	2.0	2.0	2.0	2.0
1인당 자산취득비(정부기관 천원)	4,981	5,080	5,182	5,285	5,391	5,499	5,60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인건비

- 개정안에 따른 대법관과 대법관비서관의 인건비는 증원인원(대법관 86명, 비서관 86명)의 보수와 사회보험 기관부담금을 합산하여 추계함
 - (보수) 증원인원에 직급별 1인당 보수액과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적용
 - (기관부담금) 보수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무원 사회보험 기관부담 요율 적용
- 2025년 기준 대법관과 대법관비서관의 보수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2] 법관 및 법원공무원 직급별 연봉액: 2025년

(단위: 천원)

구분	대법관	대법관비서관(4급) ¹⁾
봉급	111,522	72,407
관리업무수당	10,037	6,517
정액급식비	1,680	1,680
직급보조비	19,800	4,800
명절휴가비	11,152	7,241
정근수당	9,294	6,034
정근수당 가산금	-	1,560
재판수당	4,800	-
성과급(A등급)	-	7,087
합계	168,285	107,326

주: 1) 법원공무원 4급 평균 호봉(24호봉)을 적용

자료: 대법원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증원되는 대법관과 대법관비서관의 인건비는 다음과 같이 추계됨

[표 3] 개정안에 따른 인건비 추정: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대법관	보수	4,941	10,300	15,913	16,295	16,686	-
	기관부담금	649	1,359	2,114	2,180	2,249	-
	소계	5,590	11,659	18,027	18,475	18,934	72,684
비서관	보수	3,151	6,569	10,149	10,392	10,642	-
	기관부담금	414	867	1,348	1,390	1,434	-
	소계	3,565	7,436	11,497	11,782	12,076	46,355
합계		9,154	19,094	29,524	30,257	31,010	119,03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나. 기본경비

□ 기본경비는 대법원의 보수액 대비 기본경비 비율을 적용하여 추계함

- 2025년 일반회계 기준 보수액(본부 인건비+소속기관 인건비, 1,393,531백만원) 대비 기본경비(90,168백만원)의 비율(6.47%)을 적용

[표 4] 개정안에 따른 기본경비 추정: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보수액	대법관	4,941	10,300	15,913	16,295	16,686	—
	비서관	3,151	6,569	10,149	10,392	10,642	—
	소계	8,092	16,869	26,062	26,687	27,328	—
보수액 대비 기본경비 비중		6.47%	6.47%	6.47%	6.47%	6.47%	—
기본경비		524	1,091	1,686	1,727	1,768	6,79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 자산취득비

□ 자산취득비는 개정안에 따른 증원 인원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담 정부기관 1인당 자산취득비 단가를 곱하여 추계함

- 자산취득비는 증원에 따른 신규 임명의 첫해에만 발생하며 이후 기본경비에서 충당하는 것으로 가정

[표 5] 개정안에 따른 자산취득비 추정: 2027~2031년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증원 인원	대법관	28	29	29	—	—	—
	비서관	28	29	29	—	—	—
	소계	56	58	58	—	—	—
자산취득비 단가(천원)		5,080	5,182	5,285	—	—	—
자산취득비		284	301	307	—	—	89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라. 차량 임차료

□ 차량 임차료는 개정안에 따른 대법관 증원 인원에 2024년 기준 차량 임차료 단가와 국회예산정책처 전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각각 적용하여 추계함

- 대법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대법관(13명)의 임차료는 363,052천원이며, 차량 1대당 임차료 단가는 27,927천원임

[표 6] 개정안에 따른 차량 임차료 추정: 2027~2031년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증원 인원	신규	28	29	29	—	—	—
	누적	28	57	86	86	86	—
차량 임차료 단가		29.6	30.2	30.8	31.4	32.0	—
차량 임차료		829	1,721	2,649	2,702	2,756	10,65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마. 추계결과

- 개정안에 따라 대법관과 대법관비서관을 각각 86명 증원하는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2027년 107억 9,100만원, 2031년 355억 3,400만원 등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총 1,373억 8,400만원(연평균 274억 7,700만원)으로 추계됨

[표 7]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정: 2027~2031년

(단위: 백만원)

구분		2027	2028	2029	2030	2031	합계	연평균
대법관 증원 (안 제4조)	인건비	9,154	19,094	29,524	30,257	31,010	119,039	23,808
	기본경비	524	1,091	1,686	1,727	1,768	6,796	1,359
	자산취득비	284	301	307	—	—	892	178
	차량 임차료	829	1,721	2,649	2,702	2,756	10,657	2,132
	합계	10,791	22,207	34,166	34,686	35,534	137,384	27,477

주: 본 추계는 인건비, 기본경비, 자산취득비, 차량 임차료 등 추계가 가능한 항목에 한정하여 추계한 결과이며, 실제 대법관이 증원되는 과정에서 법정 시설비, 사무실 재배치 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대법관 인건비, 대법원 기본경비 비중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대법관과 대법관비서관만 증원하는 것을 전제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장삼열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삼열	02-6788-4831	jsy@na.go.kr